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02.2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2. 주택법령,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때 또는 시정조치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3.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업계획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4. 해당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·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또는	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2. 주택법령,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때 또는 시정조치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3.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업계획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4. 해당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·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또는	<p>기한이익상실 사유 안내 강화를 위한 강조 표시</p>

태양열 주택인 경우 기 설치한 난방 설비를 철거한 때

5. 국민주택건설자금, 중도금대출 등을 받은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 대출금 해당액

6. 전(월)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

가. 임차주택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퇴거한 경우

나. 임차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를 초과한 경우

다. 목적물 변경 시 법인, 조합, 문중, 교회, 사찰,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(단,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)

라.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마.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7.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

8.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 “세대원”)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

9.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, 신생아의

태양열 주택인 경우 기 설치한 난방 설비를 철거한 때

5. 국민주택건설자금, 중도금대출 등을 받은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 대출금 해당액

6. 전(월)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

가. 임차주택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퇴거한 경우

나. 임차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를 초과한 경우

다. 목적물 변경 시 법인, 조합, 문중, 교회, 사찰,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(단,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)

라.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마.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7.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

8.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 “세대원”)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

9.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, 신생아의

<p>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	<p>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30 521 1302 651"> <tr> <td data-bbox="730 521 1070 651"> <p><u>상기사항을 확인 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</u></p> </td> <td data-bbox="1070 521 1152 651"> <p><u>본인</u></p> </td> <td data-bbox="1152 521 1302 651"> <p><u>(서명 또는인)</u></p> </td> </tr> </table>	<p><u>상기사항을 확인 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</u></p>	<p><u>본인</u></p>	<p><u>(서명 또는인)</u></p>	
<p><u>상기사항을 확인 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</u></p>	<p><u>본인</u></p>	<p><u>(서명 또는인)</u></p>			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,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·자매(이하 “미성년 형제·자매”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 단,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②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애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,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·자매(이하 “미성년형제·자매”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 단,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②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애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대출 자격요건 및 사후점검 내용 강조 표시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>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세사기특별법”)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주택”)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>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세사기특별법”)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주택”)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사후점검 내용 및 기한이 익상실 사유 강조 표시</p>